

## ‘房星七亂’과 ‘李在守亂’의 주도세력에 관한 새로운 자료

朴贊殖\*

### I

주지하다시피 1898년의 ‘房星七亂’과 1901년의 ‘李在守亂’은 제주도 근대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민란은 大韓帝國 시기 제주도 민들을 대상으로 수탈을 심화시켜 가던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하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던 항쟁이었다.<sup>1)</sup> 그러므로 두 사건 사이에는 공통점이 여러 면에서 발견된다. 우선 민란의 주요 원인으로 牧場土를 비롯한 公土에 대하여 과다하게 징세하는 稅弊가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산간 지대에서 火田을 경작하던 빈농층들이 대거 민란에 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두 사건의 이면에는 도외에서 유입되어 들어온 신앙체계인 南學과 天主教가 각각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중앙의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제주 유배형에 처해졌던 정치 유배인들이 각각 이 사건들에 간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한말의 외세 침략이라는 외적 조건이 두 민란에 각각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란지도부가 일본 침략세력과 어떤 형태로든지 연관성을 맺고 있고, 특히 李在守亂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침략 의도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반면 두 민란 사이에는 차이점도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대립구도

---

\* 제주대 강사

1) 房星七亂과 李在守亂에 대한 기존연구의 검토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拙稿, 「濟州島史研究 회고와 전망(1980년대)」, 韓末·日帝時代, 「濟州島史研究」 창간호, 1991.  
拙稿, 「韓末 濟州地域의 天主敎會와 ‘濟州教案’」, 「한국근현대사연구」 4, 1996(근간 예정).

의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房星七亂이 화전민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 관·향리·향임충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던 반면, 李在守亂의 경우 일반 민인들과 항임세력이 연대하여 摻稅官과 결탁된 천주교회측과 항쟁하였다. 둘째로는, 남학과 천주교의 민인들과의 결합 형태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즉 남학은 大靜郡 光濟里를 중심으로 하여 화전민들과 결합하여 민란을 주도하였던 반면, 천주교는 오히려 민란참여자들에게 공격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셋째, 유배인들의 동향에서 차이점이 보인다. 즉 房星七亂 당시 유배인 金洛榮·崔亨順이 민군 지도부에 합류하여 민란에 참여하였으나, 李在守亂에서는 유배인 崔亨順·李範疇·李容鎬·張允善 등이 천주교에 입교하여 민군으로부터 배척당하였다.

이러한 두 민란의 연관성 때문에 제주지역의 근대 민중운동사를 검토할 때는 이 사건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기왕의 연구에서 이들 민란에 대한 자료가 많이 발굴되었고, 자료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작업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은 당시 민란주도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는 자료상의 한계점으로서, 결국 연구자들로 하여금 민란의 전체 구조를 그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그런데 최근 두 사건의 보고서와 재판 판결문 원본이 영인되어 나와서 부족한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하여 주리라고 기대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소개함으로써 연구자들이나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자료에 나타난 주도세력의 성격을 간단히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 II

『司法稟報』 2권(亞細亞文化社, 1988)<sup>2)</sup>에는 房星七亂에 대한 累理使兼濟州牧使 朴用元<sup>3)</sup>의 보고서(「報告書 第二號」; 이하 「報告書」로 약칭)가 수록되

2) 「司法稟報」는 1894년(高宗 31년)부터 1907년(光武 11년)까지 朝鮮王朝(및 大韓帝國) 法部에 전국 각지의 官衙들과 地方裁判所들이 보내온 報告書·質稟書 등 각종 公文書를 法部에서 製冊한 방대한 자료로서, 현재奎寧閣에 收藏되어 있다(懷德府, 「司法稟報 解題」, 「司法稟報」 1-5, 1988).

3) 房星七亂의 책임을 지고 李秉輝 牧使가 책임되고, 朴用元이 1898년 2월 20일 자로 새로이 濟州牧使에 부임하여 왔다.

어 있다. 여기에는 민란주도자들의 신상과 범죄 내용이 소상히 정리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1898년 房星七亂의 주도세력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것은 「續陰晴史」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드러난 한계였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중심으로 房星七亂의 주도세력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報告書」의 사료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는 자료상의 한계로 房星七을 비롯한 南學黨 중심의 御南軍에만 주목하여 왔다. 그런데 「報告書」에는 화전민을 위주로 하여 도민들 가운데 참여하였던 자들의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 따라서 이들과 남학당 지도부와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報告書」에는 지금까지 불분명하게 알려져 왔던 房星七의 나이, 入島 시기, 민란시 그의 지위와 계획·활동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sup>4)</sup> 즉, 그의 친족인 房鑑玉의 공술 내용에 보면, 그는 50세이고, 본처은 전라도로서, 1891년에 제주에 들어와서 1898년 당시에는 菱花洞에 거주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梁明模의 공술에 의하면, 처음에는 姜辟穀이 梧登村의 高如松이란 인물을 主法으로 세울 것을 제안하였으나, 房星七은 鄭鑑錄의 참언에 따라 유배인 鄭丙朝를 主法으로 삼을 것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鄭丙朝가 도피하여 버림에 따라서 결국 자신이 스스로 法司가 되어 독립정부의 건설을 시도하였다. 이때 房星七은 제주의 유배인들로 하여금 六曹를 구성해 하여 중앙정부와 같은 체제를 수립하려고 하였다.<sup>5)</sup> 따라서 「報告書」를 작성한 朴用元 牧使는 이 사건을

4) 房星七의 신상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의 두 가지 기록에 불과하였다.

① “……狀頭方甲 一名鑑社 又一名星七 同福人 年前入島者 體幹長大 有膽力  
好術數 山祭二十年 與姜辟穀·鄭先馬 八十老童 皆稱異人”(「續陰晴史」光武  
2년 3월 1일)

② “……有陸民房星七者 以甲午入濟州 解妖讖星曆惑衆……”(「梅泉野錄」光  
武 2년 2월 2일)

연구자들은 이 기록에 따라서 房星七은 나이가 80여 세이고, 1894년에 동학 농민전쟁에 참여하였다가 관의 검거를 피하여 제주에 입도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여 왔다.

5) 이러한 내용은 「續陰晴史」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완하여 주는 것으로서, 이 민란의 지도부가 別圖의 건설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今國運已衰 眞人當出於海島 此機不可失也 且濟州謫客之多 未有如今日  
文武俱修 此天贊吾事也”(光武 2년 3월 4일)

단순한 민요로 보지 않고 반역 사건으로 중앙에 보고하고 있다.

셋째, 「報告書」에는 민군의 조직에 대하여 「續陰晴史」의 내용을 보완시켜 줄 내용이 적혀 있다. 즉, 姜齊平·金安日을 先軍領으로, 梁用巳·姜明松을 後軍領으로 정하고, 吳乙生과 房星化(房星七의 弟)는 장정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房星七의 심복 부대인 御南軍은 20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각자의 목봉 머리에 '南'자를 새겨서 남들과 구별하였다.

넷째, 민란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록도 일부 보인다. 우선 牧使 李秉輝가 수탈한 嘉火稅의 액수가 기록되어 있어서 화전민들이 봉기한 원인을 실감하게 한다. 즉, 1897년의 제주읍의 장부에 기재된 규정 집세액은 1,200石 1斗였으나, 실제 도민들로부터 집세한 액수는 1,838石 14斗 7合이었다. 또한 이 사건에 참여하였던 민인들 가운데는 이전 1896년에 있었던 민란<sup>6)</sup>의 진압을 담당하였던 蔡龜錫 大靜郡守나 朝天金氏 일파 등 제주도 토호 세력에 대하여 반감을 품은 자들이 많았다고 「報告書」에는 적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房星七亂과 연관성을 갖는 1896년 민란에 대하여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報告書」에는 반민란세력인 倡義軍 주도자의 면모와 그들의 활동 내용이 소상하게 밝혀져 있다. 이는 민란시 대립구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房星七亂을 전후하여 제주지역 향권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각 주도 인물들이 민란에 참여한 동기와 활동 내용, 민란 과정에서 민군에 의하여 피살된 자들의 신상, 가해자의 명단, 민란주도자들에 대한 처리 내용, 민란 진압에 공을 세운 자들에 대한 포상과 포상에 필요한 재원 마련 계획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의 「報告書」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房星七亂 주도세력의 신상을 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up>7)</sup>

6) 이 사건은 1894년 甲午改革 이후 실시되었던 새로운 지방제도의 시행에 반발하여 도민 姜瑜奭과 宋啓弘 등이 주도하여 일으킨 민란이다(濟州道, 「濟州道誌」第1卷, 1993, 1013-1014쪽 참조). 그러나 이들이 왜 신제도의 시행에 반발하였고, 민란의 전개과정이 어떠하였는지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7) 壹章閣에 소장된 「光武4年 濟州牧刑名簿」(奎-21278)에는 민란주도자들의 신상과 형량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도 함께 참고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房星七亂’과 ‘李在守亂’의 주도 세력에 관한 새로운 자료

〈표 1〉 房星七亂의 주도세력

순번	성명	거주지	나이	신분(직업)	비고
1	房星七(甲, 鐵社)	大靜 光清 菱花洞	50		1891년 전라도에서 입도 피살, 狀頭·民軍의 總大將·法司
2	姜辟毅				피살, 南學黨, 민란주모자
3	鄭先馬(山魔)				南學黨
4	崔亨順	濟州邑內	28	出身, 유배인	民軍의 右大將(中軍)
5	金洛榮	濟州邑內		유배인	피살, 民軍의 左大將(大將)
6	梁明模	大靜 上文里	35	농업, 前座首	징역 15년
7	白鶴彈	濟州 一徒里	37	笠工	징역 15년, 左翼將
8	朴信吉	大靜 鹿下旨	47	농업	종신형
9	姜齊平	大靜 義南里	28	농업	종신형, 民軍의 先軍領
10	金才能	大靜 大補里 火田	36	농업	징역 15년
11	金安日	大靜 道順 法井洞	48	농업	종신형, 民軍의 先軍領
12	梁用已	大靜 上文里	44	농업	종신형, 民軍의 後軍領
13	姜如云	大靜 西峙	46	농업	징역 15년
14	姜明松				民軍의 後軍領, 도망
15	吳乙生				聚丁 來會, 도망
16	房星化				房星七의 弟, 聚丁 來會, 도망
17	文基成		-		房星七을 隨從
18	房鐵玉				房星七의 친족
19	金均均				諺兵書와 鄭錄冊 작성, 도망

위에서 보듯이, 房星七亂의 주도세력은 房星七·姜辟毅·鄭先馬·房星化·房鐵玉 등 도외에서 입도한 南學黨 세력과 일부의 유배인, 다수의 대정군 지역의 화전민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梁明模와 같이 座首를 지냈던 자도 있지만, 주도세력의 대부분은 화전을 경작하던 빈농층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房星七亂은 신흥종교와 화전민층이 결합하여 지방관·향리·향임층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다.

### III

李在守亂의 지도부에 대한 平理院 判決宣告書(이하 「判決宣告書」로 약칭)

는 1995년 總務處 政府記錄保存所에서 간행한 「國權恢復運動判決文集」에 수록되어 있다. 「判決宣告書」는 李在守亂의 주도자들에 대한 平理院의 최종 판결문 원본으로서의 사료적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는 吳大鉉, 李在守, 姜遇伯의 판결 내용이 「舊韓國官報」(光武 5년, 1901년 10월 18일자)에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굴된 「判決宣告書」에는 이들 외에도 金南赫, 趙士成, 高永守, 李元方, 高三伯, 姜伯伊, 馬贊三 등의 관련 내용이 들어 있어서 사건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민란 주도자들에 대한 신상명세가 뚜렷하게 적혀 있어서 이들의 거주지, 나이, 직업 등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천주교회측에서 사건의 주요혐의자로 지목하였던 前大靜郡守 蔡龜錫에 대한 1903년 9월의 平理院 판결문도 들어 있어서 주목된다. 더구나 이 판결문에는 1901년 5월초부터 비롯된 大靜郡 민인들의 民會 개최로부터 그 이후의 전개과정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여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民會에 집결한 민인들이 濟州牧使에게 稅弊와 教弊의 시정을 호소하여 허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上京하여 호소할 것을 결의하였음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또한 이 사건의 발단과 관련하여 종래 주목되었던 조직은 蔡龜錫 등이 주도하였던 '大靜商務社'였다. 그런데 이번에 발굴된 姜伯伊와 馬贊三의 판결문에는 '大靜商務社'에 이들이 관여한 내용이 간단히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判決宣告書」는 商務社에 관련된 사료의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姜遇伯이 山砲手를 모집한 경위, 各里 洞任들이 동원된 경위, 민군의 입성 후 천주교 신자들을 죽출한 내용 등이 부분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결국 「判決宣告書」는 李在守亂의 주도자들에 관련된 최종 판결문으로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서 李在守亂의 실상을 재조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자료는 韓末 大韓帝國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판결문이므로, 사료를 취급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李在守亂을 바라보는 정부측의 시각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타 다른 자료(金允植의 「續陰晴史」 및 교회측 자료)와의 비교 검토 작업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判決宣告書」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李在守亂 주도세력의 신상을 표

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李在守亂의 주도세력

순번	성명	거주지	나이	신분(직업)	비고
1	蔡龜錫	대정군	52	大靜前郡守	商務社 分社長
2	吳大鉉 (吳乙吉)	대정군 예래리	27	前鄉長	商務社 明社長
3	李在守	대정군 인성리	25	里綱·官奴	商務社 執事
4	姜遇伯	대정군 월평리	41	里綱	商務社員
5	姜伯伊	대정군 예래리	67	里綱	商務社 明查員
6	馬贊三	대정군(천남영암군)	50	商民	商務社 班首·收錢有司
7	趙士星	대정군	29	목수	商務社 執事
8	金南赫	제주목	34	驕備	城內 開門狀頭
9	高永守	제주목	64	砲手	
10	李元方	제주목	44	尊位	
11	高三伯	정의군	36	海夫·洞長	

민란주도세력은 大靜郡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표에서 보듯이, 민란주도세력은 商務社 조직원들이 대부분이었다. 商務社는 원래 褚負商 조직으로서 관권과 밀착된 어용조직이었으나, 제주도에서는 그 조직 형태를 빌어서<sup>8)</sup> 조세징수권·상권 등을 장악함으로써 경제적 이익단체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sup>9)</sup> 大靜郡의 商務社 조직에는 당시 大靜郡守인 蔡龜錫이 分

8) 褚負商 조직으로는 1883년에 惠商公局이 설립되었으며, 1885년에 商理局으로 개칭하였다. 1894년에는 商理局이 혁파되었다가 1895년에 정부는 商務會議所를 설립시켰다. 그리고 1899년에 商務會議所를 개칭하여 商務社를 설립시켰다. 惠上公局의 지방조직으로는 道에 都班首·都接長·幫辦을 두었으며, 각 邑에는 班首·接長을 두었다. 그리고 商理局의 경우에는 지방임원으로 都班首·都接長·公事長·明事長·都公員을 두고 그 밑에 書記公員·本房公員·執事·使令·房直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商務社의 지방조직으로는 각 지방에 支社를 설치하며 支社의 分社長은 관찰사가 겸하고 牧使·府尹·郡守가 分司務長을 겸하며, 그 밑에 公事員·掌務員·財務員·書記·執事·幹事·驕備을 두었다(崔珍玉, 「韓末 褚負商의 變遷」, 「精神文化研究」 29, 1986, 151-159 등). 그러므로 大靜 商務社는 이러한 보부상 조직의 지방 임원 명칭을 빌려 썼음을 알 수 있다.

9) 大靜 商務社를 단순한 반천주교 조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본래 대정 상무사는 봉세관의 집세에 저항하고자 하였던 조직이었다(『續陰晴史』 光武 5년

事長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商務社 간부들 가운데 대부분이 大靜郡의 鄉長과 里綱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일반 商務社員 가운데는 商民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sup>10)</sup> 따라서 이러한 商務社 조직에 주목하였을 때, 李在守亂의 주도세력은 우선 자신들의 향촌사회에서의 기득권을 수호할 목적으로 민란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대체로 鄉任 세력이 주도세력으로 나서고 있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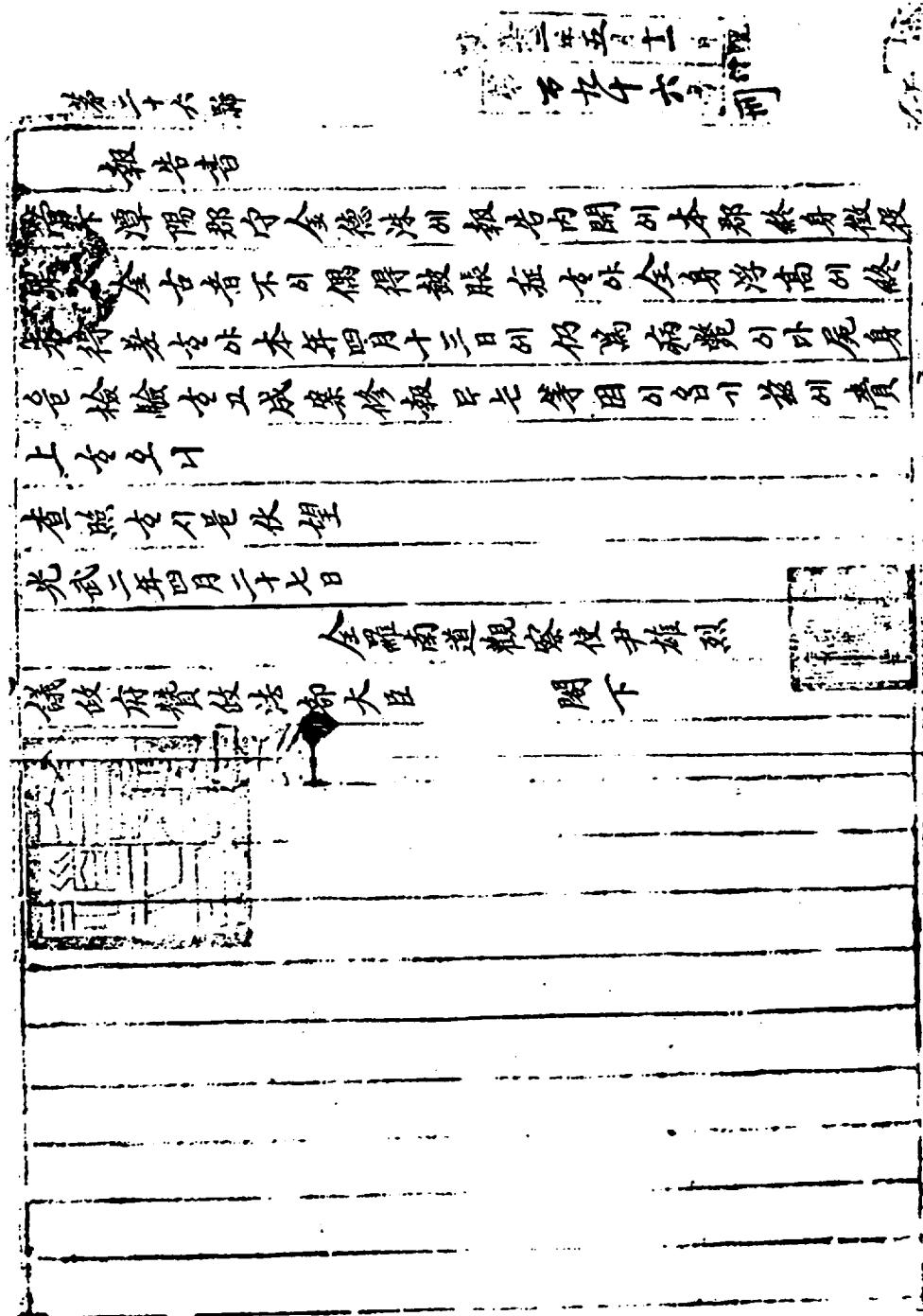
李在守亂에 향임충이 적극 나서게 되었던 이유는 韓末 천주교회가 사회세력으로 성장하면서 기존에 향권을 주도하였던 자신들을 위협하였던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李在守亂은 향임충이 주도하는 가운데 화전민을 비롯한 빈농충과 다수의 일반도민이 참여하여 摻稅官과 천주교회를 대상으로 하여 전개되어 갔다.

---

5월 9일). 그러나 세폐를 시정하고자 하는 민인들의 움직임이 民會로 발전하여 가자 상무사의 대표였던 蔡龜錫은 상무사원이었던 麥伯伊에게 상무사를 혁파할 것을 권유하였다(「判決宣告書」). 그리고 蔡龜錫 자신은 商務社와 民會와의 무관함을 강조하면서 교회측으로부터의 공격을 피하여 보고자 하였다(「續陰晴史」光武 5년 5월 15일).

10) 商務社員이었던 麥伯伊의 판결문에는 蔡龜錫이 商民들을 불러모아 商務社를 혁파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하며, 馬贊三의 경우에도 말을 행상하는 상인이었다.

11) 「判決宣告書」외에도 여러 자료에서 향임충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례가 확인된다. 拙稿, 「韓末 濟州地域의 天主敎會와 '濟州教案'」을 참조하기 바람.



## 報告書第二號

本職到任後에詳探民擾事狀則非擾伊逆也而逆魁房星  
 七歲甲子本年三月十四日이내為倡暴人等所殺이을同黨之  
 已捕及追捉者是次第招入玄祚前後事實是僕聞盤問則  
 梁明模所供內이矣身是大靜郡上丈里農民也以陰曆正月  
 十八日이聞有衆民皇林之事而所謂狀頭房星七是始達  
 於路上玄祚問其訴由則答以為燒火稅濫捧事也以此自  
 朝家至己為革罷而官貪以欺國誣民故至有此訴이니  
 이을바如斯聞之矣乙卯二月二日이房賊이在法正地金安日  
 家玄祚煽民作擾之說이狼藉喧傳則本郡守蔡善卿  
 言謂矣身曰汝於吾等內이輒經座首之任則不得不送  
 汝探之이故至遂往金家則房賊이對衆出言曰聞牧使  
 使姜伯을이欲捉殺吾輩云乙卯吾當先殺姜伯乙卯繩革  
 諸奸為辭故至矣身이言其不可則彼終不從乙卯欲為驅  
 民入城之計而矣身懼其禍及而避歸乙卯奔告本郡守  
 乙卯欲為還家則郡守曰汝以同心做事様으로往其處乙卯  
 探情以未云而矣身이告以後日王石保林之可慮則郡  
 守曰豈可無發明之道乎이如是曉諭故往見房賊則  
 授矣身以毛笠乙卯使之同行而以姜朴平金安日互稱以  
 先軍領而驅民先往乙卯梁用己姜明松을이各以後軍領

而率衆後進宮門吳乙生及房賦之弟星化下亦聚丁來  
會而同月十日由房賦口使衆民皇各持木棒而入城  
時邑民及官屬輩或有窺視者則并折旋之意早有  
所啟東而伊日衆可數萬也計姜黎乎金安日深用已  
外傳致姜伯甥侄僕海不為名者則房曰此鮮人之甥  
侄也計吉士使之打殺而仍使其身皇請來配人金洛榮  
崔亨順後由房曰傳來因唐長而威有之吉士使徙民  
領口為宜云則崔曰苟如是也吾不來也呈于官民口  
有分吉口為敵乃爾口必陪坐牧使吉士請來紳士吉非  
糊糊族鮮外可也云而房曰從來示弱口不能濟事於吉  
濟未狀云三  
上期欲請出牧使故立矣其口入政事言口語未竟由房  
又率民入庭而牧使亦下庭則房曰民人之拖免等口不  
是異事而何故幾人殺吾子口云則牧使曰從何聞之耶  
初無是事云而房賦口倘以丙申民擾扶頭捉納之人及時  
往作警諸人並捉來事且為言而牧使許之則房乃率衆  
退出而衆民口要其舊場並領吉士復與房賦皇一齊  
糊入吉士故行取打牧使之舉而大靜郡守皇以丙申擾  
捉納之婦皇亦為被傷而失身以該郡牛勿杞之惹至假  
傳扶頭之言於衆民吉士仍令集兄及衆民皇保撫以去  
而本牧首書記文肅立稟該牧使口下竟死於亂棒之

下。岳衡辭之被打外文簿之燒燼亦在伊時而房  
 賊出官門外觀德其否以金洽榮為大將言可以崔  
 亨順為中軍。乙卯與金洽榮女耳密語後以使矣身  
 旦至請來配人鄭洗馬丙朝故至。言則稱病不來而金  
 洽榮謂房賊曰事不可無預備計立使之發戶庫之  
 米。吉內取武庫之械。言以為防禦之計而有所謂姜辟  
 教者來訪房賊則與之先生丙言遇之。乙卯孝  
 姜金三漢相議曰計將安出。姜自悟登村外有高孝  
 子如松者。古山出天之孝也。可受天命。立為圭法。可  
 也可云則房司彼乃無識無威。不足以副家望也。必  
 以鄭氏是為圭法。不可應議語則向所謂鄭洗馬足以  
 富之也。現今編配諸人可備太常計立送轎迎鄭則  
 鄭已逃避而姜也勸房自立。則房賊始為據之計。乃  
 曰吾本向南移時。山神以五百將軍付我出世之意。至  
 已現於夢。計立遂自立為法司。古山即法天司民之義也。以  
 大韓旌義兩郡守署遣及第大統責馬代算。謂事  
 事。立榜四門而聞朝天民人等倡義。來攻之。說古立領衆往  
 彼則該里所聚之民。勢孤即散而房賊以前判官金  
 膽城前事。金膽海之出義聚衆。叶濟州郡守金熙胄  
 之上。告變。丹該郡守叔前府使。遇相之丙申。檢鬼捕納。

事是為據言上項人等家舍是或燒或毀而濟倅則其  
諸族之家舍俱被打破逼死其徒弟聚衆以爲房賊  
隨從大基歲叫做殺口門房賊。慶京兵下來李在積石  
城上並埋死城頭吉又有借兵日本之密謀而未發。果使  
崔亨順至往于城山浦漁林日人處。省山歸語房以  
日人聽從副房賊小鮮送來民曰吾當借來日兵方作以拒  
京兵吉所以赦眾命。吉與矣身及金洛榮崔亨順姜  
春平具乙生是同登日船而遭風不行之際聞眾喧嘒  
守城募民之說。一齊下陸而房賊心腹之所謂御南軍八十  
餘名尚在浦邊故主欲與之同入城中。吾母不知產  
生。

第三卷

實吉呼轉向山村而伊時來附於房者漸衆。吾以及  
見倡義大之招衆擊賊吉稍稍散去而于二日傳義兵  
之起。到故里矣。身則隨機避還而追聞房賊。爲倡義兵  
所殺。吉姜畔教金洛榮亦相繼而死。由是日本所  
遣諸兵書及都鎧甲。金歲均而爲之所謂正法冊子。亡房  
賊自筆而矣。身之當初往見是受官指揮。卒單竟相隨亡。  
身不得。由是姜春平所供內外房賊之驅民入城也。  
則不從者則必欲毀其家而打其人。故至為其所屠。而強  
從之。由是房賊以心腹三百餘名。是稱以御南軍。吉使  
之各於林頭山。刻以兩字而表之。由是聞房賊。北朴信

吉日先犯牧使之智引極為垂恃云而朝天金熙臻之丸上  
 出於文基成之手叶以是內金在能所供內房賦之佐殺也  
 例勦搜軍刀於矣身故豈不得不佩之而伊時首犯牧使者  
 云朴信吉口告且先歐文周具者是個瞎子而姓則姜也  
 口是先打俞海辰者此深用已叶以是文基成所供內  
 矢矣身引與房賦入城古云佩軍刀隨行而今犯犯罪古口不  
 拘何俟引是果然往朝天子時口有何許人避走者故立以  
 棒再打則其人口還了一棒于矣身口是朴信貴莫佳古云  
 技軍刀而所之則當下脣倒而追後始知其人之為金  
 熙臻叶以是朴信吉所供內矣身口因房賦指揮古  
 濟州

## 幕 道

云佩軍刀隨竹而矣侄子厚之犯殺而在囚者毫破其  
 加而放之口告且仍為入衛古云腕去牧使所着之笠古口一杆  
 以棒之後口不敢再犯而書記大周具則眇一目之姜如云  
 口是先打叶以是姜如云所供內矣身口亦佩軍刀古且  
 係於關場口是才不向文周具下手而大抵人之眇一目者  
 不但矣身一人則彼兩人口少見他瞎子之竹打而認以為矣  
 身古作有此挺身立證叶以是矣身則雖抱杖下口豆沙不  
 以不打而自打叶以空口金安日所供內今年三月四日  
 房賦口謂以欲避直捕而來口吉且留矣家者為三四日  
 而及夫率衆入城之時口令矣身先竹故立朱其言從之

이오면 유헤辰이姜伯之甥侄也。이오면姜伯族戚則逢輒捉來之意。至有房賊所言。乞其身及姜蘇平深用已三人。이오면捉俞來而先打之人則蒼黃中未及見之。이오면衆民作錢時。失身。非不隨衆同入。이오면實不見誰犯。使外誰打大吏。이오면自韓彈所供內。由房賊之率黨入城也。이오면紫粧。不入故里。往見房越古。且饋以粥。而給以糧。而後。이오면使之歸。四門通交易而房賊以失身。豆為左翼將。이오면。謂以無識而降為執事。故豆為勢所迫。古。不得。不惟其言是從。이오면房鎮主所供內。由房星七失失身之同胞弟也。豆年今五十而本以金難道之民。享辛卯濟州役。

第 三

夏。入濟州古。今居養花洞而性本浮浪古。既不從父母之言者久矣。則鄉有態同生之勉而改之。이오면其造。造情節毫實牙。不知。이오면又聞出善人等所告內。由房賊。李廉入城也。配人崔亨煥。言於配人前校理李容錦曰。吾觀此舉。非機伊逆也。計將安出。李曰。君。假為其心腹。古。乘機圖殺。以為可。古。仍授以方略。則崔遂從之。而是時。請配人。聚首避在于朝天里。古。與前判官金膺斌。前主事金膺海。首先倡義。이오면房賊。懼京兵。來古。欲借兵糧於日本。則崔亨煥。暗生奸計。討之心古。自請往漁旅。日久處。

古事記以來計古丘遂出海浦古言房之逆狀於日  
人古丘鈞以誘房登船後合力殺之則必有重責計  
古丘歸言以所幹如意則房乃解送衆民古丘出浦登  
船而遭風停泊之際忽聞城中有變古丘房遂下陸古言  
復欲聚衆入城而是時之前縣監洪在晉也率其弟前  
縣監在深及子侄輩古丘急閉西門古丘前縣監宋斗玉  
乞率其子錫珍及其第九玉與家丁古丘亦開東南北  
門而城中民人少數少古丘舉烽追沒則洪宋兩人多設  
炬火古丘重張旗勢古丘發送倡義大於各里古丘使之  
衆民而亦有諸配人之費計古丘是夜之前主事金  
湖州水

第 三

宋斗自鄧州十里許挾北村丘順還收使于城中古丘旁  
賊不敢入城古丘轉向山村之際古丘洪宋兩人多殺民丁  
古丘使配人崔亨順前郎廳吳順沫前五衛將軍在塔  
前司果姜詩馨等古丘領出南門而出身金南胤古丘外  
舉民四百餘名古丘自西村來古丘合兵一處古丘衆心成  
城古丘莫不貫勇矣古丘遂西馳千里許古丘接戰於外  
都里攻軍塞南崔亨順等古丘從山上順勢擊之古丘彼  
衆古丘敗散而奔賊之力窮古丘走避村家則崔亨順吳  
順沫姜詩馨及軍校趙成五等古丘大燒其家古丘鎗  
銃古丘交加合力殺之古丘金洛榮是房誠下陸後古丘知

事不皆十二徒崔宣頤入城。其以掩跡之計立托言共  
誅房賊。古五哩砲城上。以火攻陷城而北。이오금姜辟毅  
與前監役黃炳郁。外使安永道呈捕納之路。為衆  
民所殺。이오금房賊之弟星化。大聚衆復來之說。有  
之。則上項洪在晉宋。王金膺斌。金熙。平反前僕使深  
濟。夏前主事金在鏞等。相率守城。其多有勤勞  
之意。이오금以言乎本事。則欲呈狀而蠲稅。其民所以  
相應也。據錢家而打人。其衆所以從也。少鳥集。  
不過鳥合。이오금突厥異蠻。作。이오금觀其設施。唯  
周一某之未滿。이오금厥心腸。唯雖萬剛而猶輕。이오금

蓋此房星七之陰。首充謀。非一日者。由多年精  
神。因果因何事而情。而兩者參通。이오금為民事而發  
之。이오금被碎衛燒錢屋。이오금係囚故。而敵行官狀殺人  
之。이오금置何辟。而稱其軍以御南。이오금自其居自殺。中止  
是覆載之難容。이오금逃而易免。而拒借兵於他界。而  
出海。其奈舟中皆敵。이오금有倡義之諸人。而圍山。古今  
無能草間求活。이오금皆可誅也。이오금宜有衆刃之文。加一  
均。均是犯也。恨未告。株之先施。이오금洛榮姜辟毅段  
是乘轍。於房賊也。便是翼之。而於鳥而輪之。於車也。  
外小大橫輪。叶百凡。事希是無不與。之同焉。則其希可

故是俱無異辭而今已盡覽古文不必更論이より  
 而明模  
 之始終助惡之觀於本事指漢之無遺漏外渠口發明之  
 亦破綻而可知也라既言當有避歸之事古而何出後乃不  
 脱之語立雖以出力效官而作為非叛之證이니至於從賊借  
 兵而莫掩助逆之判이より姜齊平金安日則轉致俞民之  
 當曰弦上之六十四非自由古來領行先軍是便同帝崩之  
 鬼古動輒為禍則推波助瀾而厥罪惟均이より自鵠彈  
 金才能如基成朴信吉姜如云等改之受賊牽制是縱云  
 如牛馬之宰絰이니入城倡獗이何至若鳩犬之翫狂卫  
 施中朴信吉은其所首犯牧使宣達魁而亦已之則必也正  
 名은斷不可이より基成是一刀殺金熙臻之事是  
 辭承款에少無雜色古文中有若干之體之附於渠而使之  
 言也古如法償命은斷不可이より姜如云는先打女周  
 是是兩人證眼이準進具明이니一辭賴古이萬萬可痛  
 이마온上頃諸漢及房鎮王是并着加牢囚古이내  
 所出之房星化金成均梁用己吳乙生姜明松等段은并  
 在处未捉而其中房星化金成均梁用己等三漢은罪固  
 難貸의宜即捉勘故呈另加偵探古이내鵠惟城民則慮  
 餘等之復熾古이내頻驚夜半之夢古而賊黨則懼密網  
 之不解古이내似有沙中之語이니叶遵曾從同治之訓古이

做反側自安之政也。昨房星化金成均梁用己外에  
勿問之意。至餘訓兩郡吉門揭榜四門。昨使之安心歸  
農。吉門所謂房賊之簿錄與日本研送請兵書。前  
牧使在任時已為上送于內部。○音也。此大抵慮初民狀  
之因鳩火稅過擣事而起也。計雖以昨年言之。計民間執  
數上為一千八百三十八石十四斗九升七合。이온다邑簿所載上  
不過一千二百石斗。이온다衆民焉。因此起端。吉門房賊則謂  
此可乘也。昨卷出一大闢場而前牧使不得不以民間研執  
之一千八百三十八石零으로成說。後에 依其石數。古作每斗頭  
三升式減給之意。至曉諭衆民。古卫綱。以每年一千石式酌定。  
洪州本  
事。豆難報度支部。○壬午便是墮耗而顧也。計莫之故。共  
與克己深斗究謀方急之際。是引夫鳩火稅是以一千石  
을主而定。則民間執數一千八百三十八石零中에 一千八百三十八石  
零。是固宜減給於民間而前牧使於一千八百三十八石零  
每斗頭三升式所減者。不過五百五十一石十斗四升九合。又  
則未減之數。外商為三百八十七石四斗四升七合。久故。本職  
이到任後에查出其未減條三百八十七石零古作照數單減  
於民間。古門以言半出義諸人。則前判官拿膺城前主  
事金膺海段。是應營將之將燎于原古作擬營將之先  
燎於城古門爰有義將之勤人。古作不愧里名之朝天而

亦是諸配人之從而激之方。乍使之倡焉。이요며前縣監  
洪在晉前縣監宋丰王陵之父子守侄之各自故死外猶  
有光於編妻妾而為伍外唐宗黨而添兵是則兩處  
倡義而收效焉在邑古立各蒙調遣而發號也同儕이요며  
准亨順謀是可謂敢不厭於兵而謫不失於正也。計  
登舟而行刺計雖望於要難十先據山而料勝是算  
不嫌於馬服而其所以能出奇鐵賊之專出於配人李  
客鎬川激勸之指授之而李客鎬之彈竭周旋到底  
積人効이又多在於城村出義이우며出身金南胤陵是四  
百餘名之榮為其用이己是出人而及其合力破賊之場  
濟州以

收使印信。牙房。簿錄。乞并移檢來이은。唯其檢來  
賦簿也。故豆房賦之為巨逆也。豈舊古同黨之為誰某  
也。某掩則勇。敵人之能無精細者是未宣多得이요며前  
即廳兵順沐前司果姜時聲前五衛將高在璣。軍校  
趙成五等陵是冒犯雨而深入也。而披戈林而直擣也。乍  
能告厥이은。足見其知有義而不如有身이요며前監  
役黃炳郁之挺納姜辟故。牙前主事金熙斗。一迎還前  
牧使朴俱保可嘉이용고。上項洪在晉宋丰王金齊誠。金  
熙斗。又前僉使梁濟夏前主事金在鏞。等이為應。餘  
黨復熾。乍相擊。守城이多有勤勞이요며蓋房賦之

邊機首領是由於秉城鮮衆이 오秉城鮮衆是由於精兵  
日本이 오精兵日本이由於本兵下來云云이 오京兵下來云  
云은由於本州本守金熙官之上京告變則第源極本  
士兒拔都中之效勞가恐怕不在出義諸人之下이온이  
獨外及於從官士兒奇危이遍於一門士兒極側敵이  
이며右項諸人은其在激勸之義에含有示義之舉이 오  
而取考前牧使報度支部存案則倡義可用下錢四千  
六百八兩九錢三分是民貸人用이다이음고前牧使施賞錢  
一千二百兩는社還四百石每石三兩本賣用이才為鮮而亮  
其事實則前牧使施賞條一千二百兩는果是社還中賣

用이오이至若倡義可用條則四千六百八兩九錢三分  
內에三千七百三十五兩는社還八百三十石每石四兩五錢  
本賣用이을고其餘八百七十三兩九錢三分民貸이온  
디其印鑄昭然之社還賣用條上初不擧倫朴音고全以  
民貸呈希報者已足其實而且前牧使施賞條上每石  
三兩本執價古立倡義可用條上每石四兩五錢本賣用  
者又是倘况而此猶屬於第二第三也라夫矣寧이必  
於鐵鑄則社還之擅詳於倡義可用條或可以次仲孺  
於倉으로為證이오이至于以國輕而賣自裁出은惑是  
幸當이다온社還一千三百三十石虛留事是今方修輯手

度支部 이금자 죠부 대신 체념添清則 汤潔也且形端則表  
正也。才若使前牧使李秉輝呈政固無耗則民豈有  
怨而惟其失望失心也久矣故豆化厥積不平之民。舉  
有窮斯溢之心則彼矢懲不軌之房賊。提問抵諫者  
一出除獎之說而從之者數萬則自謂民心皆歸外  
古。今遂行此亮謀者也許竊探物議則尚於敵之阿林  
之賴計劃地而相言者或云房賊。為民而尤以大計卽  
半此而益見夫民厭苛政之若是其甚이오。以大計前  
郡守蔡龜錦言之才。工被敵之事上謂以丙申擾匪堤  
約之故이다。이유가致擾之端是由於前牧使盤棒場火  
燒水庫。

稅之故이다. 이온바此則含有其說而至於亂民之多出  
該境은。縱雖於較溝郡而多人民之故이다. 이오。中地方  
民之不能使之鎮靖은難免失職之責이다.是以此意  
報明于政府及內部事。

照亮。七。信。伏。望。

光武三年四月二十日

審理使兼濟州牧使朴用元



議政府憲政法部大臣

閣下

判決宣告書	
全羅南道大靜郡居	前鄉長
被告	吳大鉉
年二十七	
全羅南道大靜郡居	里偶
被告	李在守
年二十五	
全羅南道大靜郡居	里綱
被告	姜遇伯
年四十一	
三理院	判決
全羅南道濟州牧居	崔庸
被告	金南赫
年三十四	
全羅南道大靜郡居	李守
被告	趙士成
年三十九	
全羅南道濟州牧居	砦守
被告	高水守
年六十四	
全羅南道濟州牧居	管佐

被告	李元方
	年四十四
金羅南道旌義郡居 被告	海夫 高三百
金羅南道大靜郡居 被告	里綱 姜宿伊
金羅南道靈敵郡居 被告	商民 馬賈三
平理院	年五十
<p>有被告吳大鉉李在守妻遇伯牙金南赫趙士成      張守山李元方叶萬三伯牙姜宿伊牛馬賈三等以某事      件言檢事公訴由此言審理之以被告吳大鉉李靜郡      領長主事行乞今年正月三十六日申訴郡民人等。      謂以耽羅堪支王年正月會于郡城乞勒執被告      李在守大頭女小被告恩童的身弟鄉佐女布民訴大頭      似甚不當故呈遞入官衙申留宿兩日美以本郡守下駕往      月會于申申請追送乞山同月念賈以濟州民人等數千名      聞大靜民解散之奇立相率來到乞搜覓被告之孫</p>	

被官避身於民家。丁州民等。既道郡民之竟致被害而  
象民言。汝若不為本頭。以美衆人之贍死云故。是被官  
被脅而向瀋州之路。至翰林洞。水耳諭其化則衆方  
有解散之漸。而勿忘有教數百名。各持鏡銅瓦提至翰  
林洞。小向民會放而教中有傷多。被官亦為教所捉  
拿。水耳諭至犯境。可署。使金昌珠。小聞。發來到。小曉  
諭教人。立押被官。以日。立。三郡民人。謂以救出狀  
頭。立散石復食。以教數。並衆。可教人等。直入太靜寺。  
以旅庫。安樂城。醫院。新民三四人。被教徒。火攻。於  
其理。率三郡教徒。持軍器。直向瀋州。水耳諭。埋砲  
平理院。  
壬午四月。指揮。三郡之兵。聚。於。首。源。坪。宮。一。連。分  
為兩陣。水耳東西門外。水耳在守。為西陣。指。文。卫  
姜。遇。有。水耳東。陣。將。水耳相。守。壬午日。之。冬。之。教。等。出  
南。門。放。民。多。被。殺。故。立。山。心。愈。敵。高。基。集。山。死。年  
期。敵。破。城。于。城。中。危。急。空。放。出。被。告。言。逃。之。晚。前。衆  
反。言。被。告。人。事。言。仍。為。狀。頭。水耳攻。城。並。起。言。城。中  
之。民。其。盡。來。之。古。生。計。禁。由。言。男女。食。力。言。爭。先  
開。門。言。李。在。守。由。西。門。入。言。被。告。言。但。由。東  
門。入。高。爭。教。人。之。死。者。甚。多。言。不。加。宣。才。教。師。計  
被。告。大。供。輔。教。師。之。能。免。遇。言。退。之。力。也。三。司。里。大。多。教。

之被殺於其身之主謀者當此無地而不敢族明  
 乎故在宇治太靜郡仁城里御言舉行于本年三月  
 望間太靜一邑之民可以奉稅官稅獎至許擅正次諸會  
 入鄉寺長兵大鉢已連言立名不知姓姓人斬差矣計會云  
 諸事大玄為伏見小將欲舉訴之降本府牛山郡報告  
 于上司言遂從民願橋塗之晝諭多食言使之解故故云  
 各自歸家出濟州天人等可聞風煽動言到太靜言  
 捷得是大法為伏見小體到燒矣引上署理牧使弓削往  
 晓諭外亦如太靜郡寺故云民將解故之際教人百食名  
 持劍趕到高向民會放丸音傳打是大法言水發至死境  
 球理告云

大教出仍言教人等入太靜郡言奪重蓋直向濟州開  
 門推牛寺三郡民皆知兵鉢已死言相謂曰吾等以扶  
 走樂計才徒傳人命言不可不齊同死中奔往濟  
 州教徒才已為隔城閉門立推牛放死士故州城東  
 西屯聚亡民人中九死者外會為十八人計來言會  
 濟音格獵同心拒戰言至十四日之久則城中柴木俱  
 三四月和九日作壘拔城中言若不開門則言大  
 城十計言中其翌和十日城中民金南赫等拿書外  
 旋門隙出来于十一日午刻爭起附言括人會民故  
 三齊擁入古來縣城中民三會對突厥教人道被殺

奇母故告水供橋失舟可以里銅之致三岸洞民赴會計  
使司以教人雖學他國書中自是我臣民之同人教  
中寺官不能治言庶民不敢忤言奉奉金財千人言立書取誰  
何言立甚至殺人命而不能成獄言向令毒三郡之民不耐稅弊  
此鄉會仲許何勝於教人而奪軍器陷城於死此非逆賊  
乎小矣等所殺是乃逆賊也多非良民也幸雖死十無完尸  
言多立故告善遇伯大靜郡月牙里銅三岸行言等  
板告研居洞山行距郡山為八十里且家有老父言承  
待病不離故所帶里銅之任三里下釐正次入于本村  
適其時鄉長吳大鉉與副吏房金玉毛有奸淫事相  
互理究

聞之端而款金玉毛是教人也即吳為教徒所用故民  
謂吳大鉉為快頭言欲為贊正教引出因本郡守  
之曉飭言仍為解故言時濟州之民聞風而起者與郡民  
合勢言搜捉吳大鉉為快頭言向濟州之路北翰林  
洞言教人等持兵器趕到言傳信言會民言傳打吳大  
鉉言方在死境故署理收使水閘錢來到言傳教吳  
大鉉而還所矣言教人等以還入大靜言奉奉軍器據城放  
砲殺傷人命言發向濟州去吳生其時叫被言外以導之  
親有言在麻侍酒計不及往見言同月于四日洞  
民等言來首故告曰方今快頭吳大鉉為民害甚計外

反為教人所打捉入濟州卒死乃已。三郡之民一心合力呼訴次方向濟州。以此洞里網三何不率民往赴。被當辭不獲已。與洞民偕往濟州。三郡民屯聚黃沙坪而分作兩陣。李在寺立西門外而為西陣。將立被告立東門外而為東陣。時教人等已入城中。欲燒城。燒立門不出而以眾瓦之力。不能抵敵。欲燒山砲立向城。應砲多日相持不下。四月十一午刻。城中民金南林。李輝。并力開門。故三眾困。齊擁入。向被當與西陣將李仁寺立東門入。半七聚才觀傳亭。上。城中男女。三郡民人。皆捉至理院。判決。

李教人等殺害。吳大錢。寺立。三亦無異同。金南林。濟州城中。付賣處。今年金研三月間。三郡。李教人等。有謀害。濟州城。據高僧教徒。先入城中。埋砲放丸。閉門不出。立會民。東西門外分陣。屯聚。相守十餘日。城中半報。俱之。人心惶惶。四月西門外。屯聚。立狀。禪。李在寺立。辭通內辭。若不開門。則當燒火于城中。故已修塔。通出送。立四月初八日。被告。升。與城內諸民之。禪。宿。以請。門。本郡。外與教師。約定。許以四月十一午後。閉門。退。

待其美日至十一月午後猶不聞曰不可被告復以  
象民男女呼詐便度今教師外以後待四五日上報  
乞之于城中男女大一時齊起去即開東西門立卫  
格為象民方外教人等一至致有教害言一某大德姜  
遇伯李在守金昌洙恭馮錫等來誰曰雖有可據立卫  
被告趙士成妻遇伯之陣中執事至今年陰曆三月  
二十二日姜遇伯指揮姜洪石小卒天數千立卫在某郡  
為美里至玄武五個往來相致小出軍赴會者多嚴  
飾立卫東路互值水在義一郡之民之信起立向濟州  
作脚立姜遇伯萬三伯等恭請明確立卫被告高水市立  
事平定  
以備急為某立四月不記今年陰曆四月和姜遇伯  
曰李眾民數千立卫被告平居洞河口立水東由民丁立  
修築車路立被告不敢作遂立水東洞河口三伯是同為  
被告李在守曰被告供種事於庭待可度本邑種事立被告  
賤民而立耕無一人絕糧之事於中也豈當特種立被告  
李元方之門內算位至李在守入城之初先捉被告立  
水謂以已往領燒錢人計立卫故被告之妻與洞  
民呼詐本郡之奉神父大都衙門道在計立貞來詳  
記立水初不入教言七十明闡生立于鄉民誠智言不  
勝古水教高伯年立提納底會而幸得生立此卫其外

某無人指示言多年一直抵賴本被告押上時該洞民  
之被告是為言多年訴狀取覽言多年先執  
被告言欲傳之打言使捕納教徒則其免稱被告遂與  
里民言擇充教徒言承捉得教人言多年被告本前民指  
使言淡言教民言捉納言情狀並言被告高  
仰是本年陰曆三月二十三日大醉居裏遇被告成事領  
民人數十人到海美里言承招致五鄉住處各巡應會  
之言除令言若不應會言觸住處當犯有故言不敢違期  
言被告亦以洞長言四月初九日民會所言酒食元  
者三千餘名言精神可憐送故言醉為避身言外根  
主理院

見則玄惟順長來之通文使被書言故不許已應行言  
丑十三日夜仍為逃避引其至被告所居洞領住處言  
解言立被告言持未之令言是次放立被告妻子押去  
民會則勒無奈何言自現民會是日欲為院被告言甚  
端某乞言收棍千度言口真出血之快三個人共知言  
言教人五名言要文降和言之教師言研去書言上  
被告外書寫言半出才善過伯口格及言其真言才善供  
歸誣之流言言在守研供該卷書言半在  
被告所書言被告缺札不書言雖有言當初民  
會言往赴言書寫之便言應行言言完言言一被告



罪傷教以重論條凡二罪以上俱教以重者論文忠宗時度  
玄武被告金南赫趙士成高水守李元方之大會通鑑  
折條軍服騎馬作慶會日為臣者律以照文小指一百指  
終身處言才十金南赫之李在守之於書懲勸玄宗至  
舊御衣圓命之詩至賤明文以至事皆有  
明馬玄武道主威之妻母相州威相主隨行少之  
參其情狀食有不愁之子本律以等差減之餘一  
百餘後五年歲玄武高水守以一个正夫立年近七旬  
而亂民之威相主被告水推銅廵行之子故急行犯之  
言憑可無玄武李元方之李在守之被勘稱從玄武子  
平理院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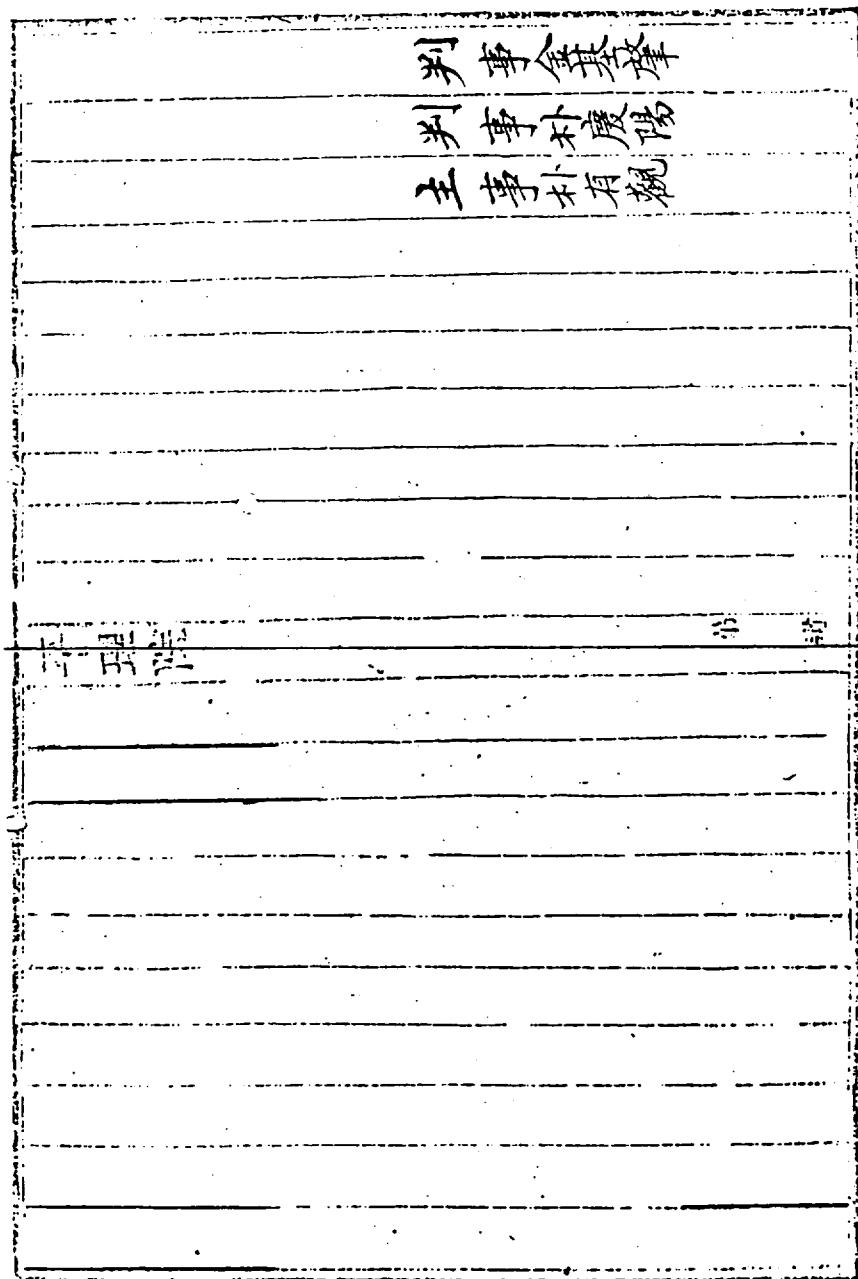
教中甲子餘人坐教護之事有或主參其情狀的量  
之本律以等差減之餘一百餘後十年歲玄武被  
告高三伯姜伯伊良材三之大明律律已歸不應為條凡不  
應得為兩者事理重者律以照文小指八十歲玄武  
歲五十五年十月九日

平理院事理重者律以照文小指八十歲玄武

平理院事理重者律以照文小指八十歲玄武

判事系相李根澤

判事申慶均



## 判決書告書第十六號

全羅南道濟州牧居

大韓前都守

被告

蔡龜錫

年五十四

判子改

右被告蔡龜錫可對言事件由檢事令許審理則被告伏辭可  
 己亥陰曆七月份由大韓郡守言被告言辛丑三月份由本郡右曹申白  
 各里人民可以捧枕叩頭奏事已來會本郡言許搜得吳大鉉  
 啟為狀頭百姓報告本牧言知照枕官言許從民願申理之  
 意至晚飭解矣而中翌日而左面人民亦稱枕狀空空  
 丘聚會于邑距五里許地云故主躬往諭晚言作伴即各歸安  
 平理信

馬連飭言許傳之各鄉則家民三郡之民不破枕獎與  
 教獎言許今月三十日由會同于濟州南門外黃沙坪言請三  
 郡守及朝官儒鄉督吏言許一場談辨後許本牧言許教獎  
 三歲節勿施言許教獎言許約條施行可到事如意言上  
 京呈訴次民議已定言中今不可中途變改言立發向濟州而  
 義之民與濟州東村之民三汗勤矣可至二十六日言許失身  
 可因本牧使署理金昌洙書括言許發行向州之日由教徒數百  
 人持銃佩劍言立到濟州楠林洞言許炮傷平民言立直到大

年正月

年正月

濟州道

靜言昨勒奪軍突言昨康城放砲言中丸純者人曰被傷者亦  
 多矣計教人等曰聞三郎民會之說言翌日欲行言許入府  
 言昨據城金門立埋砲拒戰而見善沙坪來會一說言立出  
 去南水口外言昨教平民可無所顧而言足以民口屏浦言  
 山野砲寺才亦為來會于東西門外故至矣身可往民會所言  
 慎勿向教師放砲之意三百餘騎諭古立首尾數騎到本地東西  
 亭昨曉諭眾言可由至四月十日內府用米糧俱之言昨歸  
 等可取會門言昨東西門外羣聚之民可齊入府中言作搜  
 捕教徒而每工處教言工至十三日內來民欲為傳去教師故至安  
 身與本郡守會言并力保護言五年援面諭於會民言  
 三月言

其翌日內東民東出言五西民西出言各其所住處而為  
 鮮散이리니 王師出駐之後乃歸化이리民擾頗甚始於  
 杞官言非終於教徒之詳載於新收使反交理使報告則不然  
 詳陳佚이古今若民擾時이實有勞勞工犯無罪犯云이니  
 此事卒言 光武五年十月分內濟民擾狀頭吳大鉉과李在  
 守叶善慶伯等이押上審查之時이被告以應問人이同時  
 被令書言이可狀頭三犯是已為大法言立隨從諸民充輕重勘處  
 云云이내가被告之相犯是其時憲審官及宣教師具馬琴이十論  
 但以有罪冤量이니然이니詰撻未恤犯之情을不服言이  
 滯田三年未決이니被告本身前守狀一官言이民教起核

不能彈壓吉凶以致蹂躪傷一境言立且軍鬼保等何等慎  
重和官庫所儲鬼伐之多數見失於教民空亡漏職之罪二  
難道當勘其事實可被告陳供自服耳諸証人莫不証言  
明白自己被告於龜鑑合大明律公式編制書有違條凡奉  
制書有所施行而違者律曰同律各例三罪俱從以重論條凡  
軍鬼遺失全子件以上律互同律各例三罪俱從以重論條凡  
發收童者論文叫做言件答九十懲役三年半叫做言工計

光武七年九月王春

平理院檢事洪鐘樞檢事金正穆檢事金洛憲會

平理院

裁判長李南熙

平理院

小判

判事朴輔和

判事太明軾

判事朴承祖

判事宋安會

主事金教謨